#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28

발의연월일: 2024. 7. 9.

발 의 자: 송재봉ㆍ이연희ㆍ김우영

이광희 • 이수진 • 황명선

김성환 · 임호선 · 김문수

김동아 · 정준호 · 문금주

민병덕 • 이강일 • 김남희

서미화 · 임미애 · 박민규

이재관 • 박지원 • 박수현

허 영・양부남・이훈기

주철현 • 박정현 • 박해철

백승아 • 민형배 • 오기형

문대림 • 이재강 • 최민희

박선원 • 황정아 • 박희승

박용갑・박범계・안도걸

이언주 의원(40인)

## 제안이유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 특별법"이라 한다) 상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하여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정부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음.

「전통시장 특별법」상의 골목형상점가(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 밀집)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의 상권 1/2의 상업지역 내 100개 이상의 점포 기준은 대도시 밀집지역에서나 가능한 요건으로 대다수 중·소 시·군·구에서는 법률의수혜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골목상권은 기존의 전통시장 등과 달리 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의 상점이 불특정하게 형성되어 있고 지역의 주민·문화·자원 등과 연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전통시장 특별법」 등으로는 지원의 한계가 있음.

경기도, 부산시, 제주도 등에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골목상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법률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지역경제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3조).
-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종합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함(안 제4조).
- 다.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관할 지역의 기본계획을 수립

해야 함(안 제5조).

-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6조).
- 마. 지방자치단체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7조).
-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협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안 제8조).
- 사. 시·도지사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등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 아.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신청서, 회원 동의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해야 함(안제10조).
-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역량강화 교육, 공동마케팅, 시설환경개선, 매니저선발·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2조).
- 자. 골목상권 공동체 내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음(안 제16조).

#### 법률 제 호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의 성과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 2. 골목상권 특성별 추진 전략 및 방법
  - 3.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
  -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5. 그 밖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따라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정하려는 시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 계획(이하 "지역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골목상권 공동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 여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상권의 매출액 변화에 관한 사항
  - 2. 창업 폐업 및 종사자 수의 변화에 관한 사항
  - 3. 상권 이용·유동 인구와 상권 배후지 및 인접 주거지 특성에 관한 사항
  - 4. 상권의 문화・사회・경제 등 고유특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골목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

- 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조례의 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내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골목상권 활성화위원회 구성·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골 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협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골목상권의 상인 조직,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및 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골 목상권 활성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골목상권 활성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1. 골목상권과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자문
  - 2.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자문
  - 3. 골목상권과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배분 및 조정 에 관한 자문
  - 4. 골목상권 및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제안
  - 5. 그 밖에 골목상권 및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골목상권 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등)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제10조(골목상권 공동체 신청 및 지정)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도지사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 상권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한 단체의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사실을 통보했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 신청 및 신청 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해제) ①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상권 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지정된 골목상권 공동체 구성원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지역상 생구역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 3.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
  - 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 3.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매니저 선발·교육

- 운영
- 4. 골목상권의 재난 대응 물품 지원
- 5.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업종의 제한) 시·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된 상권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 중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가 운영 하는 직영점
  -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점포의 경우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체인본부가 직영하는 점포에 한한다)
  - 3.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 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 제14조(사업평가) 시·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

권 공동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5조(업무의 위탁) 시·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① 골목상권 공동체 내 상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